

8. 국가보안법 길들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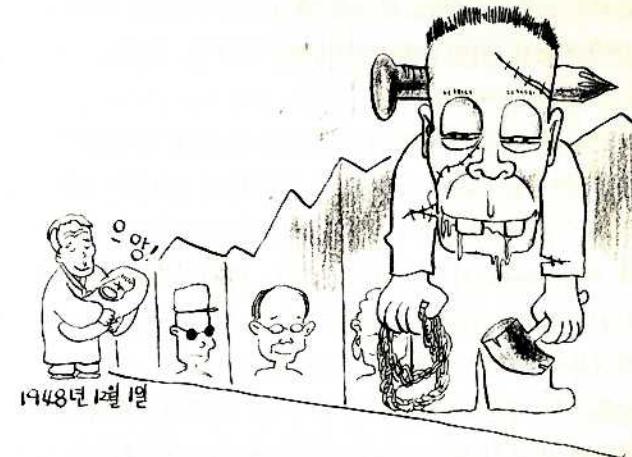
카멜레온 국가보안법

강산이 다섯번쯤 바뀌고 정권도 그만큼의 숫자로 바뀌었다. 그 속에서도 의연하게 베티어 온 것이 한들이겠는가마는 국가보안법 만큼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빛깔을 바꾸어가며 끈질기게 생존해온 것도 드물다. 이승만 독재하에서는 독립투사를 때려잡고 친일분자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국가보안법으로 4·19 혁명 직후에는 다시 조금 완화 개정되었다가 5·16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자 기존의 국가보안법에 반공법이라는 쌍동이가 생겨서 더욱 악랄하게 수많은 애국자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80년 광주를 거쳐 탄생한 전두환 독재하에서는 다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통합되었으며(물론 반공법이 가진 독소조항을 그대로 빼아들여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으로 단일화된 것에 불과하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조금씩 자신의 이빨을 속으로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사가 품고 있는 독은 여전하지만 말이다. 국가보안법의 탄생 배경에서부터 그 화려한 변신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보안법의 어머니 치안 유지법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넣고 독립운동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 법률이 바로 치안유지법이다. 해방을 맞아 일제가 우리에게 친일파를 남겨두고 간 것처럼 이 악명높은 법률은 우리에게 국



가보안법이라는 아이를 낳고 사라져 갔다.

왜 일제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의 어머니인가는 법률의 내용과 그 적용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치안유지법 1조를 보면 “국체변혁을 목적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라는 규정은 그대로 제정 국가보안법의 1조로 이어지고 있다.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

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는 어구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내용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총독부와는 다르게 남과 북에 두개의 정부가 구성된 분단상황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그 적용과정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한인섭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효과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의 역사를 뒤집어놓으면 바로 우리 독립운동사가 되듯이 이 시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가 바로 정당한 민족민주운동사라는 평가를 후대 역사가들이 내리지 않겠는가?”(1989년 3월 31일 이화여대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의 발언)

실제로 만주와 국내 도처에서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투사들은 대부분 좌익사범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등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일제하 독립운동가치고 적색분자라는 딱지를 쓰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마찬가지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좌경용공이라는 혐의로 체포되고 형장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더욱 우스운 일은 과거 군국주의 시절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위해 조성했던 반공이데올로기가 일본내에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공산당이나 사회당을 통한 좌익활동이 상당히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실리위주의 외교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그러나 5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일본이 남기고간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민족의 기슴을 멍들이고 있는 것이다.

칠삭동이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4개월이 되지 않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법률 10호로 제정되어진 국가보안법은 당시 일반 형법조차도 제정되기 전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빨리 탄생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상황에 비추어보면 납득이 간다. 당시 미소공위가 결렬되어지고 한반도가 두 개의 국가로 갈려진 상황에서 남한내에서는 줄기차게 통일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었다. 물론 미군정의 힘을 등에 업은 이승만의 한민당이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은 이러한 민족적 운동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선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줄기찬 통일투쟁을 짓밟고 정부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민당의 주요 구성인이 바로 일제하 친일파들과 지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분단을 반대하여 투쟁하던 사람들과는 반대편에 서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는 미군정과 이승만보다는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쏠려 있었다. 따라서 이승만은 결국 무력을 통하여 국민의 저항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이 바로 그런 역사사건들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승만정권은 이런 사람들을 명분있게 처벌할 법률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기본 법률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국가보안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애초에는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형태로 발의되었다. 이는 형법상의 내란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여순항쟁이 발생하자 상황은 달라지게 됐다. 제주항쟁을 진압할 목적

으로 출동된 여수주둔 제14연대가 48년 10월 19일 밤9시를 기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이는 곧바로 여수시내의 관공서를 접수하고 순천 등지로 확산되어 나갔다. 결국 진압되어졌지만 이 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서 초기에 내란행위 특별조치법으로 발의된 법률은 행위 뿐만 아니라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과 가입까지도 처벌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국가보안법의 형태로 제정되게 된 것이다.

제정과정에서도 47인의 소장파 의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김구의 한독당 마저도 배제된 상태에서 구성된 보수적 제헌의회는 결국 수차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반대론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두고두고 “신생 대한민국의 천추의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1,2차 개정

이승만 독재정권의 유지와 친일잔재의 온존 그리고 분단상황의 고착화라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국가보안법은 탄생되자마자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1949년 한해에만 해도 이 법에 의해 검거 투옥된 자가 118,621명에 달하였으며 그해 9~10월 사이에 해산된 정당과 단체만 해도 132개에 달하였다. 전국의 형무소에는 수형자의 80%가 좌익사범으로 들어찼으며 결국 넘쳐나는 죄수들의 수용을 위하여 영등포와 부천 형무소를 신설하였고 이들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 검사와 판사를 대거 임용하였다.

국가보안법이 분단과 독재유지에 이처럼 맹활약을 하게 되자 더욱 정권은 이 법률에 의존하게 되고 그 모습을 더욱 세련되게

강화해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제정후 1년만에 이루어진 1.2차 개정의 본질이다. 개악된 국가보안법은 먼저 최고형을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단심제를 도입한 것이며 세번째로는 보도구금과 보도소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여기서 법정 최고형을 사형까지로 확장한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보통 형사사법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3심제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심제의 도입은 신속한 재판절차를 통하여 넘쳐나는 좌익사범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보도구금과 보도소의 설치는 현재의 보안관찰법의 모태가 된 것으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늘 사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어설프게 태어난 제정 국가보안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

1차 개정안이 다른 법률처리가 많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가 나중에 인권유린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몇가지 자구를 고쳐 수정하여 시행한 것이 2차 개정안이고 보면 결국 1.2차 개정은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 3차개정 (소위 2·4 파동)

제정초기 6조에 불과하던 국가보안법은 1.2차개정을 통하여 내용을 세련화 하였다면 3차개정을 통하여 그 몸집을 불리게 된다. 전문 3장 40조, 부칙 2조로 구성된 법률로 태어나게 된 3차개정 과정의 핵심적 취지는 단순히 북한공산집단의 공작과 내란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 언론 야당의 행동까지도 그 처벌대상을 확장한 것이었다. 즉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치, 군사적인 것에서 경

제, 사회, 문화의 영역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수집, 왜곡, 공표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민중탄압의 도구로서 국가보안법의 성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후 판례에서 신문이나 일간지에 난 공개된 사실이라도 복에 알려 적을 이롭게 한 경우에 처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인심 혹 란죄라는 것을 신설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중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헌법상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명시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구실을 하도록 하였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헌법상 기관이란 대통령과 정부 사법기관 입법기관 등일 것이다. 이외에도 고문에 의한 자백에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든지 실로 무지 막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탄생하였다.

그럼 이런 비이성적인 법률이 탄생되게된 원인은 무엇인가? 1958년 탄생하여 불과 2년후 대부분의 조항이 4·19직후의 정부에 의하여 삭제되어버린 이 법률의 탄생은 이승만 정권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1956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이승만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기붕 부통령이 낙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갖은 부정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지지율이 떨어져 이승만 자신은 간신히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놀란 이승만은 이제 국가보안법을 분단의 법률로서 뿐만 아니라 권력유지의 핵심도구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하였다. 결국 1958년 12월 24일 야당의원들을 폭력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자유당 의원들만으로 국회본회의를 열어 이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2·4파동 혹은 보안법파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국민들속에 강한 반발감을 불러 일으켜 결국 이승만의 몰락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였다.

4·19이후의 국가보안법

희생적인 학생들의 투쟁으로 촉발된 4·19혁명은 결국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4·19의 승리는 곧바로 2·4파동으로 문제점이 확인되어 있었던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곧바로 독소조항에 대한 삭제와 다른 법률로 대체 가능한 조항에 대한 삭제작업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물론 3차개정에서 새로이 모습을 드러낸 조항들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졌지만 국가보안법 자체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반통일, 비민주 악법으로서의 성격은 여전히 유지 온존되어진 것이다. 이는 4·19의 주체가 학생들과 혁신계 정치인들을 비롯한 민족통일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19직후 들어선 민주당정권은 바로 신파 구파를 막론하고 구 한민당의 후예들이거나 중소지주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였다. 목적범에 대한 처벌로 한정하기 위하여 각 조항에 “그 점을 알면서”라는 범죄구성요건을 삽입하기는 하였지만 기본 뼈대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개정취지였다. 원래 민주당인사들이 민족의 통일과 민주화에 관심이 있었다기 보다는 사상적으로는 이승만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권력쟁취의 요구에서 대정부투쟁에 참여하였던 것이기에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래서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 법률보다 개악된 측면조차 있었다. 즉 불고지죄를 신설한 것이라든가 반공법을 새로이 제정해야 한다는 입법활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4·19혁명을 통해 모아진 대중적 기세는 이러한 개량적인 민주당 정권의 법개정행위를 좌시하지 않았다. 곧바로 엄청난 대중적 저항에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은 부닥치게 된 것이다. 혁신계단체들과 학생들은 데모규제법과 함께

이 법률을 2대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격력한 반대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야당인 신민당은 법안 심의를 거부하게 되었다. 결국 민주당의 개정안은 회기 불계속으로 자동 폐기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5·16쿠데타와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강화

계속적인 혁신계와 학생들의 시위투쟁은 결국 개량적인 민주당의 보수적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발전하였으며 급기야는 민족통일론이 급격히 대두되면서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한반도를 공산권에 대한 반공의 보루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은 이러한 한국내의 상황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때 시의적절하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썩은 정치권을 비판하면서도 반공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초기 형식적인 반대의사를 보이던 미국은 내심 자신이 바라는 철저한 반공정권의 수립을 결국 지원하였다. 박정희를 미국으로 초청하고 캐네디와의 공동성명을 발표케하여 군사쿠데타 세력에게도 과거와 같은 원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미국은 군사정부를 승인하였다. 쿠데타세력은 입법 사법 행정 등 전권을 행사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임시조직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다져나갔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함께 좌초의 위기를 맞았던 국가보안법은 다시금 군사정부에 의하여 더욱 강력한 분단독재유지의 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우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6조에 특수반국가행위를 명기하여 국가보안법의 기능을 부활하였다. 이어서 1961년 7월 3일 반공법을 제정 공표함으로써 과거 국가보안법보다도(2·4파동으로 탄생한 3차개정안보다도) 그

적용범위와 형량이 강화된 악법을 탄생시켰다. 반공법은 첫째로 북한과 이에 연관된 반국가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권을 적으로 규정하였다. 둘째로, 과거 국가보안법이 목적수행에 대하여 처벌하던 것을 더욱 강화하여 직접 목적수행과 관계없는 고무, 찬양, 동조 등의 행동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셋째로, 당시까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북한과의 교류를 완전 차단하였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이 이때 생겨났다. 과거 반국가 행위를 위한 북한왕래만을 처벌하던 것을 모든 종류의 북한왕래를 비로소 금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된 반공법은 과거 국가보안법보다도 더욱 악랄하게 통일 민주운동가들을 탄압하였다. 물론 이 반공법의 제정과 더불어 군사정부는 과거 4·19이후 사라졌던 국가보안법을 재개정함으로써 새로이 탄생시키는 일 또한 수행하였다. 이로써 과거 국가보안법을 강화한 반공법과 새로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쌍두마차가 종횡무진 민중을 탄압하는 도구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쓰이게 되었다.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로 반공법이 통일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물론 두 법은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통일인사들을 형장의 이슬로 보냈으며 유신독재를 유지하는 베풀목이 되었다.

5공화국하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변신

기세등등하던 박정희 군사정권도 부마항쟁과 끊임없는 민중들의 투쟁에 의하여 궁정동 이름없는 술집에서 종말을 고하고 만다. 그리고 나서 이른바 민주화의 봄이라는 1980년이 도래하였다.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이 민주 통일로 나아갈 부푼

꿈에 부풀어 있던 국민들은 또 한차례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그 꿈을 좌절당하고 만다. 바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에 의한 12·12숙군 쿠데타와 5·18광주민중항쟁이 바로 그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자신의 선배인 박정희의 모범을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비견되는 초법적이며 정통성없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국가보위비상회의이다. 이 국가보위비상회의에서는 과거 2·4파동과 5·16쿠데타이후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국가보안법을 정비하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였다. 취지는 그럴듯하게 7·4남북공동성명이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하고 6·23 선언의 취지에 맞추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었지만 실내용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중복조항이 많아 법적용에 혼란이 있었던 것을 단일하게 하나의 법률로 정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민주화세력과 통일세력을 탄압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과거 반공법의 성과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던 것이다. 특히 제7조 고무찬양과 제8조 회합통신 그리고 제9조 편의제공은 반공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12월 30일 국가보위법회의 본회의는 이승만이 만들고 유신독재에 의하여 살찌워진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어서 꼭두각시 언론을 동원하여 (한국, 조선, 동아, 중앙, 경향, 서울신문 등) 이 법률의 제정이 마치 진취적이고 현실상황에 맞는 높은 공적인 것처럼 찬양하도록 하였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떠났지만 그들의 후예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은 또다시 초법적 정통성없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재탄생된 것이다.

6공화국하에서의 국가보안법

6·10항쟁의 결과로 전두환 독재정권도 결국 물락의 길을 걸었

다. 국민들은 오랜 염원이던 직선제를 쟁취하고 87년 겨울 새로운 민주정권의 탄생을 꿈꾸며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인하여 군사쿠데타가 아닌 부정선거에 의하여 정권교체의 꿈이 좌절되었다. 어찌됐든 새로이 개정된 직선제 헌법 하에서 선출된 노태우 정권은 6·10항쟁에서 확인되어진 민주화의 요구를 수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선거공약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악법의 폐지를 내걸었던 데서도 확인된다. 더군다나 88년 총선을 통하여 여소야대 국회가 성립함으로써 각종의 악법은 4·19직후와 마찬가지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1988년 6월 21일 김윤환, 김원기, 최형우, 김용채 의원 등 197명의 국회의원이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표하고 그해 6월 27일 제142회 임시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이 특별위원회의 정치법률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 소위원회에는 문민독재하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5인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김대중의 구령민당은 민주질서수호법이라는 대체입법을 주장하고 김영삼의 구민주당은 완전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위기는 개정안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인 민정내에서조차도 폐지론이 대두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없애도 된다는 것이다.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국가보안법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88년까지 계속 6·10항쟁의 후과로 인하여 구석에 몰리던 노태우군사정권은 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민정당의 개정안은 철회되었으며 문목사 방북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불러일으켜 또다시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사상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위기에 빠졌던 국가보안법이 다시 부활되고 노태우 정권이 자신감을 가지고 민중을 탄압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3당야합을 통한 권력재창출이었다. 실제로 89년 공안정국하에서 김종필의 공화당은 과거 3당공조체제를 벗어나 빛나간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치권의 뒷거래는 야당의 3당공조체제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결국 90년 1월 22일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이 나란히 출연하여 통합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치권 내부의 공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애초에 악법철폐를 위한 여소야대 국회는 이미 그 성격이 변질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후 3당야합으로 탄생한 민자당에 의하여 91년 5월 11일 기만적인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되기까지 국회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아무런 활동도 전개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박준규 국회의장의 무선마이크 지시에 따라 35초만에 통과되어진 6공하의 개정국가보안법은 몇 가지 형식적인 변화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악법적 성격을 고스란히 간직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속알읽기

국가보안법의 틀보기

많은 국가보안법의 실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대서야 그동안의 국가보안법의 논의는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 내용을 차분히 분석해보아야 한다. 우리 함께 팔자에 없는 법률

공부를 시작해보기로 하자.

9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전 4장 25개 조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목적 제2조 반국가단체 정의규정

제2장 죄와 형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각각의 처벌내용을 규정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구속기간 연장 등 소송과정에 대한 내용

제4장 보상과 원호 국가보안법위반자를 체포에 기여할 경우의 보상과 군인일 경우의 군법적용

4개의 장 중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개정 과정의 주요 현안이 되어온 것은 바로 제2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2장 전체도 아니고 그중 주로 제3조에서 제10조까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대개 부수적 규정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자세히보기

아무래도 2장의 제3조에서 제10조는 중요한 만큼 자세히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핵심 골자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총칙

제1조(제1항, 제2항) — 이 법의 목적을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야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국가나 국민전체가 아닌 분단독재세력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기위해라는 말의 또다른 표현이다. 이는 6공당시의 날치기 통과때 신설되어진 2항에 의하여 드러난다. 2항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이 법률이 그동안 국민의 인권을 유린해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여기서는 반국가단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첫째, 정부를 참칭하거나 둘째,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결사,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조건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를 참칭한다는 부분인데 만약 어떤 사회집단이던든지 스스로를 어떤 나라라고 부르면 우선 반국가단체로 될 요인을 갖추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상제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성화신국(聖化神國)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검찰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원래 이 조항은 한반도내에서 남한만이 유일한 정통성있는 정부이고 북한은 임의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직도 검사들의 공소장에는 정부를 참칭하여 국가변란을 피하는 북한공산집단이라는 표현을 머릿말에 꼭 붙이는 것이다. 유엔에 가입한 세계가 인정한 국가를 여전히 우리의 법률은 하나의 계모임이나 동창회처럼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서 그 비현실성과 대북적대성이 드러난다.

국가변란이라는 표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형법상의 내란이나 폭동과는 달리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과연 무엇이

국가변란 행위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제2장 죄와 형

제3조(제1항-제5항)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나 지도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형-무기-5년이상의 징역, 그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가입을 권유한 사람은 물론(제2항)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있다.(제3항)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항, 제5항)

이 내용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져 실제로 실천되지 않은 생각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수범과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을 결국 범적용의 범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마음 속으로 이 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아무런 해악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법이 가진 문제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면 그 수괴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비서를 사형시킬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통일에 절대적으로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해보라. 자신을 사형시킬 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누가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제4조(제1항-제4항) 목적수행

이 조항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형법상의 내란 간첩죄를 저지르거나 국가비밀을 수집 누설할 경우 그리고 공공건조물을 파괴할 경우나 이런 행위 등을 선전선동하고 혀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그에 따라 각각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제3조와 마찬가지로 미수범과(제2항) 예비음모자에 대해서도(제3항, 제4항)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대한 제1항의 규정이 형법의 조문을 대부분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유사하다. 따라서 굳이 국가보안법으로 분리해서 다를 필요가 없는 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타 중요시설이나 기타 물건,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등은 해석이 광범위하여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가 높고 죄형 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제5조(제1항-제4항) 자진지원 금품수수

이 조항에서는 위 제4조에 규정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자를 도와 준행위(제1항)와 더불어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제2항)에 대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선 조문과 마찬가지로 미수범(제3항) 예비음모(제4항)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위 이 조문은 북한등 반국가단체에서 벌인 범행이 아닌 국내의 자생적인 공산주의 단체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조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남한내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사회운동이 결국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이유로 모두 이 조문의 처벌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북과 연계

되어있지 않더라도 결국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많은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북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었다.

금품수수도 애매모호하여 악용될 여지는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령을 받은 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더라도 모두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질서 속에서 항상 화폐를 통한 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굳이 돈을 받을 때마다 그가 간첩일지 아닐지를 늘 판단하고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6조(제1항-제5항) 잠입 탈출

이 조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왕래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며(제1항) 나이가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위해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잠입 탈출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더불어 3.4.5조와 마찬가지로 미수범(제3항)과 예비음모(제4항, 제5항)에 대하여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항의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이란 북한전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주재 북한대사관이나 북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외국의 호텔방등도 모두 이러한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왕래허용이라는 법규정과 상호충돌을 일으켜 법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물론 아무런 목적수행의 의지나 반국가행위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이 있는 지역내지는 북한전역으로 가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반통일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경제협력을 위해 남북을 오고간 모든 사람과 지난 시기 고위급회담을 위

해 북을 방문하였던 정원식 총리나 기자들이 이 법조항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조문은 대부분 방북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주로 등장하였는데 임수경 문의환 목사등이 바로 이 처벌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을 살았다. 잠입탈출의 죄중에서 중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항의 경우에 탈출과 잠입 자체의 행동을 목적수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제7조(제1항~제6항) 찬양 고무

이 조항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등조한 사람을 처벌하고(제1항) 이러한 행위를 위해 단체를 조직할 경우 처벌하며(제2항) 단체를 조직하여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제3항) 이런 내용을 문서나 책으로 제작 복사 운반 반포 판매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미수범과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한다(제5항~제6항)

이 조항이 가장많은 문제를 일으킨 조항이며 가장 많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수많은 막걸리 보안법 사건을 양산한 주범이기도 하다. 술자리에서 북한 군기를 부르거나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는 말들이 모두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되었으며 횃김에 한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말도 처벌대상으로 되어온 것이다. 특히 제4항의 내용은 이적표현물에 관한 처벌인데 그동안 대학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막스주의 이론서들을 소지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적 목적과 이윤추구를 위한 판매는 죄가 없고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법조문의 자

의적 해석이다. 이는 법조문에 써여진 단서조항에 따른 것인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단서조항은 실제로 사람의 생각과 양심을 판단해야 하는 난점을 안고 있다. 그가 한 행위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자본론 책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여도 우리의 뛰어난 경쟁은 우선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 책을 들고 다니는지를 고도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판사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그중 한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지고 다른 사람은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무조건 북한을 적대적으로만 표현하고 생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결국 통일에 엄청난 의식적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의 모습속에도 같은 민족으로서 충분히 좋은 점을 발견하거나 동조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같은 겨레이기 때문이다. 한핏줄을 가진 사람이기에 가지는 당연한 민족감정도 모두 처벌대상으로 하는 이 조문은 대표적인 반통일 독소조항인 것이다.

제8조(제1항~제2항) 회합 통신

이 조문의 내용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의 지령을 받은 자와 어떤 형태로든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제1항)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앞서 제6조 잠입 탈출이 북한땅 및 북한동포가 사는 지역을 못 가도록 하는 조문이라면 이 조문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일체의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고 있는 반통일적 조항이다. 물론 이 내용은 6조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을 일으킨다. 즉 북한사람과

의 만남자체를 일반적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는 남한 기업들은 비공식적으로 늘상 북한 사람들은 만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하루가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경제상황에서 북한기업과 협력을 하는데 언제나 통일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간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외에도 이 조항의 북한사람자체를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반통일적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우연히 술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북한 사람이 있으면 서둘러 그 자리를 나오든지 피해야 한다. 외국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동포를 만났다고 인사를 했다가는 영락없는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북한사람을 피해다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제9조(제1항-제4항) 편의제공

이 조문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려는 사람이나 잠입 탈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총 등 무기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더불어 금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처벌되며(제2항) 미수범(제3항) 및 예비음모(제4항)한 자도 처벌한다.

각 항의 표현에 기타 편의라든가 기타무기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이 또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필깎는 칼을 “기타무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오로지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다. 기타편의도 단순한 심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들이 모두 법적용의 대상으로 될 길을 열어놓았다.

제10조 불고지

이 조문은 위 3,4,5.조등의 범죄를 하는 사람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말미에는 지난 1991년 5월 개정 당시 친족에 한해서는 그 죄를 경감하고 면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렇게 말미에 색다른 조항을 붙인 것은 그동안 불고지죄가 반인륜적인 독소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조문은 가장 절친한 친구를 경찰서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문의 해악성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통하여 들은 사실이나 의사 등 고객의 비밀을 준수해야 할 성격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를 전적으로 말살하는 것이다. 어떤 목적수행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미 법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가 주로 들어오고 통일민주인사를 구속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어온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내용을 그런데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하 25조까지의 내용은 위의 법적용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11조(직무유기처벌) 수사기관 종사자가 위 조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잡아들이지 않으면 처벌한다.

제12조(무고 및 남용금지) 허위로 죄없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원이 이 법을 남용하면 처벌한다.

제13조(가중처벌) 군형법이나 형법상의 내란죄를 지은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5년내에 위의 죄를 범하면 최고형을 사형까지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부과)이 법으로 처벌된 사람은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5조(몰수와 추징)이 죄를 범한 사람이 과정에서 받은 재산 등을 몰수한다.

제16조(형의 감면)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하면 죄를 경감한다.

제17조(타법적용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는 노동쟁의조정법 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참고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2회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정당한 수사기관에 구속할 수 있다.

*원래 형사소송법상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 할 의무는 없다. 유독 국가보안법만이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강제소환구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제19조(구속기간연장) 이법의 죄를 범한 자는 구속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수사의 중대성이라는 이유로 구속기간을 다른 범죄의 경우와 달리 1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다.

제20조(소송보류) 검사가 형법을 참작, 소송을 보류할 수 있으며 2년동안 보류되면 소추할 수 없다.

*이 조문은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설득하여 선전용으로 활용하거나 기타 다른 사건의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것으로 절차는 기소유예제도나 다를 바 없지만 다만 기소유예와 다른점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검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소송보류를 당한 사람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검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제21조(상금)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상금을 준다.

제22조(보로금)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하여 압수물이 있을때 그 금액의 1/2을 준다.

제23조(보상) 이법의 죄를 범한 사람을 신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면 국가에서 보상한다.

제24조(유공자심사위원회) 상금 보로금지급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산하에 국가유공자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5조(군법적용)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법의 대상일 경우 군사재판부와 군검찰이 소송을 담당한다.

이상으로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실 알고보면 나머지는 겁데기고 3조에서 10조에 이르는 조문이 핵심적 내용

이며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얼마되지 않는 문자의 나열들이 수십년을 버텨오며 수많은 사람을 형장으로 끌어갔다는 생각을 해보면 허무하기 짹이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비록 얼마 안있어 민족의 통일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질 법률이지만 아직도 시퍼렇게 날이 서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내용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민정부들어서도 좀처럼 사그러들 줄을 모르고 계속 민주인사와 통일인사를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다음장에서 구체적으로 최근의 국가보안법의 만행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9. 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

당신도 과거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론자였다

현정부는 국가보안법의 확고한 유지의 입장은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과거 군사정부보다도 더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되기 전 김영삼 대통령이 가졌던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과연 언제부터 국가보안법 애호자로 변모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그것은 권력에 눈이멀어 3당야합으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일 것이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김영삼 대통령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폐지의 정당성을 다른 차원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머리나쁜 대통령일지라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애초의 생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본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이 몰아낸 과거 군사정권과 같은 운명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것은 뻔한 일이다.



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 후보는 민통련의 정체질의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폐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 안기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지 1987년 10월호

89년 10월 19일.

김대중 김종필 등과 만난 야3당 총재의 정기국회에 대한 대응논의 자리에서 김영삼 총재는 악법개폐의 내용속에 국가보안법을 포함시켜 공동노력하자고 주장했다. 1989년 10월 20일자 조선일보

90년 2월 3일.

1월 22일 있었던 3당통합선언이후 신당 창당(민자당)일정과 임

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 총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 불고지죄는 완전폐지하고 잠입, 탈출죄도 범죄목적일 경우로 완화하며 반국가활동을 의회주의 주권재민 사법독립권 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등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법으로 대체입법하자고 주장했으나 노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법폐지나 대체입법대신 대폭 개정만 하기로 했다. 1990년 2월 3일자 중앙일보

1990년 5월 10일.

날치기 통과가 끝난 뒤 김영삼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의사당을 걸어나와 자신의 승용차편으로 시내로 빠져나갔다. 김대표는 자신의 한 비서를 부려 귀엣말로 “오늘일은 깨끗이 잊어버려라. 내일 일만을 생각하자”고 11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1990년 5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위의 과정을 보면 삼당합당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급격하게 보수화 되어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서조차도 반발을 보이며 북한의 남침야욕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 90%를 웃돌던 그에 대한 지지율이 허구적인 개혁의 본질이 드러나 폭락하면서 더욱더 국가보안법에 매달리고 있다. 급기야 군사독재시절보다도 더욱 많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내고 있는 요즘의 현실은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을 것이 안되는 지를 새삼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가 과거에 군사 독재자를 향하여 쏜 화살이 이제는 그를 향해 돌아오고 있는 웃지못할 현실을 김영삼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오늘도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연일 감옥으로 가고 있다.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군인보다 민간인이 낫다?

실로 문민정부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은 과거 군인들을 능가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은 그래도 자신의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하여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 그러나 민간인이 권력을 잡고난 다음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너무도 당연한 듯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아는 놈이 더한다는 격이다. 과거 스스로 독재 통치의 회생자였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지능적이고 세련되게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음은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을 통한 국민탄압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월별 구속자와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표

93년도 (총 195명\ 국보법 105명)

단위 : 명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구속자	7	4	19	19	43	28	7	13	28	20
국보법위반	3	2	16	19	6	12	5	7	20	17

94년도 (총 774명\ 국보법 388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구속자	4	42	24	25	23	215	131	97	72	74	26	41
국보법위반	3	35	18	14	8	46	62	58	43	53	19	29

95년도 (총 265명\ 국보법 117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구속자	12	25	33	34	94	67
국보법위반	8	19	22	11	41	16

* 95년 6월 수치는 6월 1일~6월 10일까지의 통계.

출범 초기 대폭 축소되었던 시국관련 구속자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법이 날이가고 달이가고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4년 들어서는 과거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 1995년 6월 10일 현재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탄압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거나 형을 살고 있는 양심수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자료는 민가협이 1995년 6월 10일 현재 각 대학 총학생회와 노동조합 언론보도 법원 구치소 구속자 가족등을 통해 조사한 양심수 현황이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95년 6월 10일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 경찰서 등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양심수는 464명이다.

이들은 학생 159명 노동자 88명 군인 전경 34명 재야 및 기타

107명 장기수 75명 농민 1명이다. 6월 10일 현재 양심수 464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전체 464명의 64.6%인 300명이다.

이들을 신분별 적용법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신분별 분류

총 인원	학생	노동자	장기수	농민	재야·기타	군·경
464명	159명	88명	75명	1명	107명	34명

적용법조별 분류

총인원	국가보안법	집시폭력	특수공무집행방해	노동관계	군관계
464명	300명	63명	41명	70명	3명
	64.6%	13.6%	8%	15.1%	0.6%

* 한사람에게 2개이상 적용된 법조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노동 관계법은 업무방해 폭력 3자개입금지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군 관계법은 전경대법, 군형법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복역 양심수 현황

95년 6월 10일 현재 국가보안법, 반공법,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7년이상 장기구금 되어있는 양심수는 모두 75명이다. 이들의 사건별, 나이별, 복역연수별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장기복역 양심수 사건별 분류

월북및 행불자 사건	6명	월남자 사건	1명
재일교포사진	7명	일본관련사진	16명
일본유학관련	4명	납북어부사건	4명
남파사건	25명	전쟁포로	2명
방북사건	3명	개별국보법위반	1명
월북기도사건	2명	구미유학생 사건	4명

연령별 분류

총	75명
70세이상	7명
60~69세	35명
50~59세	16명
49세이하	17명

복역연수별 분류

총	75명
40년이상	2명
35~39년	3명
30~34년	9명
20~29년	12명
20년 이하	49명

이제 구체적으로 문민독재하에서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김영삼 정부하에서 이어져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를 모두 듣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자체로 하나의 보고서 형태의 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아주 최근인 1995년 5월과 6월 위

반 사건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려대 반미불태

사건일자 : 5월 15일

연행자수 : 8명(군인 4명)

구속자수 : 7명(1명 무혐의) *-155만*

155만
경찰발표요지 : 이적단체조직, 한민전의 방송청취, 각종시위주도, 북한 통일자료집, 한민전방송 청취록 대학가에 배포

본인들의 주장 : 5월 24일 최홍재씨 등 4명의 구속적부심에서 최씨는 자신은 잔악회를 만든 적도 없고 수사내용도 개인적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들은 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배포)로 기소되었다.

부산지역 빛나는 전망

사건일자 : 5월 15일

연행자수 : 17명(군인 5명)

구속자수 : 11명(7명 불구속) 1명(6월 9일추가)

경찰발표요지 : 맑스주의, 공산주의 사상학습 유포

본인들의 주장 : 94년초 만들어진 빛나는 전망은 6개월 정도의 활동을 하고 해체되었고 구속자들은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성균관대 민민학련

사건일자 : 5월 16일

연행자수 : 4명(군인 4명)

구속자수 : 4명

경찰발표요지 :

본인들의 주장 : 민민학련은 완전 공개된 모임이었고 92년말 주요간부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사건일자 : 5월 30일

연행자수 : 7명(군인 3명)

구속자수 : 6명(1명 불구속)

경찰발표요지 : 주사파 구국자주대오 조직, 북한 고무, 친양하고 폭력혁명을 선동

본인들의 주장 : 구속자들은 모두 93년 원광대 총학 총여 단대 학생회 간부들로서 현재는 군복무중이거나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다.

전남대 민족사랑연합

사건일자 : 5월 30일

연행자수 : 6명(군인 2명)

구속자수 : 5명(1명 불구속)

경찰발표요지 : 이적단체조직,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배포

본인들의 주장 : 민사련은 93년 9월 전남대 동아리 중에서 전문성이 비슷한 5개의 학술동아리 연대조직으로 부정기간행물로 <민족의 길> 발행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동맹

사건일자 : 6월 9일

연행자수 : 15명

구속자수 : 15명

경찰발표요지 : 맑스 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조직강령으로 하는 이적단체 결성

위 사건들은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사건을 적발한 것 이 아니라 수년전 대학 재학시 학생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거나 이미 수년전에 재판을 받고 종결이 된 사건을 새삼스럽게 새로이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시킨 경우들이다. 실로 문민독재의 위력은 대단하여서 군사독재시절에 미친 하게 처리되어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까지도 뒷마무리를 해주는 모양이다. 아무튼 이제 문민독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걸기 보다는 제발 군사독재시절 수준으로 탄압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할 판인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강력해져가는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보면 이제 아무도 문민정부를 문민이라고 보지 않게 되었다. 이는 우리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 열악한 한국의 인권실정에 대한 지적은 자료에 실려있는 미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도 일정하게 드러나 있다. 나아가 미국은 적극적으로 김영삼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게까지 된 것이다.

10.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

어려운 시절 우리를 먹여살려준 은인의 나라에서 최근 미군폭행 사건으로 온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별로 달갑지 않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국민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는 시시각각으로 변해 왔다. 4·19 당시 이승만의 하야를 종용하고 민주혁명에 지지를 보내던 미국(당시 시위대는 성조기를 들고 행진을 벌였다고 한다)은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광주민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시민학살에 대하여 비판적이던 미국은 어느덧 항공모함을 파견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 일부 군부의 군사쿠데타를 지탱하여 주었다. 나중에는 위컴 주한미사령관이 80년 5월 16일 광주일원으로의 군대출동을 허가한 군대이동명령서까지 공개됨으로써 자신들의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이 알려지고 말았다.

이러한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이중플레이에 과연 한국민이 또다시 속아넘어갈 것인가의 문제는 둘째이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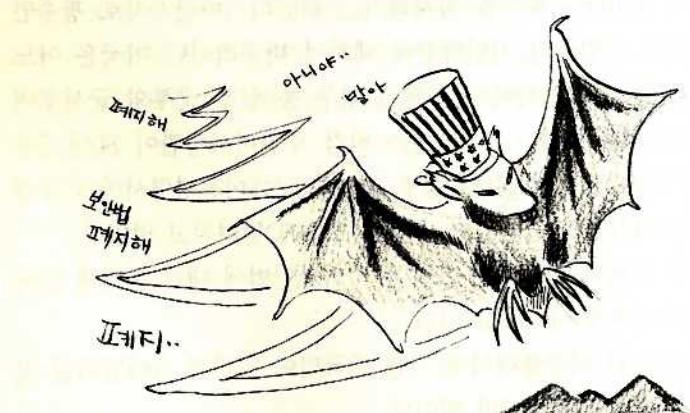
1994년 미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든든한 동지를 하나 얻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1994년 2월 25일 미 국무부의 토머스 허버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현행의 국가보안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994년 3월 2일 미국무부의 워런 크리스토퍼 장관 등은 이러한 토머스 허버드 부차관보의 발언에 대하여 이는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1994년 3월 3일 토머스 허버드 부차관보는 레이니 대사를 통해 한국 외무부에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파력한 것일 뿐 미국 정부의 공식견해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1994년 3월 5일 토머스 허버드 부차관보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으



며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미한국대사관에 전해왔다.

1994년 8월 10일 미국무부는 한국의 최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속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특별성명에서 밝혔다.

1994년 8월 9일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하여 한국정부당국이 최근 과격파 학생과 노동운동세력에 대해 일제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무더기 체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체제전복 음모보다 민주주의에 훨씬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마치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더구나 1994년 뜨거웠던 조문논쟁후의 국가보안법을 통한 국민탄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토머스 허버드 부차관보의 발언 파문에서 보여주듯이 적당한 시기에 마치 민주주의 수호자인 것처럼 나섰다가는 정작 나중에는 꽁무니를 슬그머니 내리곤 한다. 이는 수십년동안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하여 미국이 보여준 태도의 전형을 새로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북미회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마음에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을 던져 한국민들의 환심을 샀다가도 그것이 국가보안법 폐지론으로 발전하게 되고 독재정권의 항의를 받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다물곤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물어야 할 시기가 됐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

한 미국의 공식입장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산발적으로 던지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의 실질적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94년 조문파동과 공안정국의 조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민주주의 압살에 대하여 사주하고 지시하였던 것은 미국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위컴이 군대이동 명령서를 내고도 시치미를 뗀던 광주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군사쿠데타를 반대한다는 미대사관의 성명발표 이후 오히려 박정희 정권과의 회담을 통해 정통성을 인정해온 그들의 행태 속에서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면 지금 즉각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11. 한국정부가 갑자기 자주적으로 변했다

한국의 역대정권은 대개의 경우 우방인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고려하여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그래서 늘 한국정부에 대하여서 자주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재야단체와 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미국의 충고에 대하여 유독 자주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이승만이 휴전에 반대하고 끝까지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던 것이나 박정희가 카터의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하여 쌍수를 들고 반대하였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평소에는 한미공조를 대대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유독 분단질서와 독재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하여서 만큼은 아주 자주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마치 자신의 자주적인 주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 한국정부의 그러한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자.

1994년 3월 4일 미국측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다. 더불어 집권당인 민자당은 내정간섭이라며 발언의 해명을 촉구하였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크리스토퍼 미국무부장관의 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우리의 인권상황과 민주화가 팔목할 만한 성장을 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의 국내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의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장치이며 냉전구조가 와해되어가는 세계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4년 3월 10일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간첩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국내외의 일부 국보법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나아가서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법은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주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내의 법까지도 비판하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8월에도 마찬가지로 재연된다.

1994년 8월 한승주 외무장관은 12일 오전 미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필요성을 제자 거론한 것과 관련, 레이니 주한미대사를 불러 한국정부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한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현실에 비춰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작 자주적이어야 할 전분야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마치 짜기라도 한듯이 미국의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펴면서 미국을 비난하는 것 조차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우르파이라운드 협상과 같은 진정 자주적이어야 할 것에는 그렇지 못하고 모처럼 좋은 충고에 대해서는 이토록 자주적인 것은 무슨 까닭일까? 최근 북미회담 과정에서 한국형 경수로를 줄기차게 주장함으로써 회담을 난관에 처하게 하였던 것과 맥락이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알아서 기는 것이다.

최근 언론사들이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앞장서서 과도한 이데올로기 공작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가 김숙희 교육부장관의 한국전쟁관련 발언을 맹비난 함으로써 결국 장관자리에서 물러하게 한 것이라든가 94년 4대일간지에서 박홍의 명확하지 않은 발언을 대대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검찰이 오히려 그 수사를 하느라 허둥대던 모습이 이런 종류의 것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자주성을 옹호하는 식민통치, 자주성을 옹호하는 언론통제라고나 할까? 사실 한국정부의 한국형 경수로 관철주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 이외에 별반 협상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주적(?)인 반발은 미국무부가 가끔 폐지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모면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독재정권을 조종하는 방식을 더욱 세련화하여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12. 세계의 지원사격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위 미국의 경우처럼 그렇게 우스꽝스럽지는 않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치열하고 복잡하며 완강한 투쟁은 이제 결코 우리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세계각국의 관심속에 진행되어지게 되었다.

현재 김영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화라는 구호는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의지와는 달리 세계화의 진행은 환경문제나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세계평화애호민중들의 노력에 의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리우환경회담이나 빈 세계인권대회 그리고 각국의 민간단체들의 결합과 공동사업의 모색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와 아시아 워치, 유코넷(한국인권을 위한 유럽 교회 협의회)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여기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유엔인권위원회등의 국제

적 압력과 민간단체의 활동현황 그리고 빈 세계인권대회의 진행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92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한국정부가 국제인권 규약을 비준하면서 제출한 최초보고서를 심의하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서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개폐되어야 하며 분단국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과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최종 권고문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이 권고문은 한국 정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 권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지 않는 한 한국정부는 세계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국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은 국제적으로 범죄정권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은 다음해에 열린 빈 세계인권대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한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시아 및 식민지의 상황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인권유린의 악법과 제도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1993년 세계인권대회를 열 것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유엔 인권대회가 25년 만에 개최되었다. 빈 세계인권대회에서의 결의는 어차피 각국 정부대표들의 서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인권억압에 반대하는 노력은 민간단체에 의하여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유명한 세계민간 인권단체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오월광장 어머니회 (Madres de Plaza de Mayo)

아르헨티나에 있는 인권단체로서 극심한 독재하에서 아들과 딸 남편과 며느리를 잃은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민가협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체가 처음 결성되어진 것은 77년인데 그 당시 이곳저곳 경찰서를 떠돌며 실종된 가족을 찾아다니던 불쌍한 어머니들이 14명이 한자리에 모여 결성하였다. 초기에는 무척 어려운 활동을 한 모양이다.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없는 상황에서도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고 계엄하에서도 대통령궁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이 단체는 성장하였다. 마치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이 교도소 앞에서 철장을 붙잡고 단식투쟁을 하시는 모습이나 경찰서에 들어가서 책상을 둘러엎는 모습을 연상하면 이 단체의 활동이 어떠했을 것인가가 쉽게 떠오르게 된다.

이들은 5명이상이 모여 시위할 수 없는 계엄상황에서는 원모양으로 돌면서 “나는 지금 혼자 걷는 중이다”라며 경찰의 저지를 무시하며 투쟁을 하거나 인플레율이 높아 돈가치가 별로 없는 실정을 반영하여 버리기 쉬운 유인물 대신 지폐에 자신들의 주장을 써 정부의 홍보성 잡지를 구매하는 방법을 쓰는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줄기차게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이 어머니들은 활동을 할 때 언제나 흰 머리수건을 쓰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이들이 쓰던 기저귀를 끊어 미사포를 대신하여 쓰고 10만명정도가 참여하는 천주교의 성지순례에 참여하면서 유례하였다고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 19개의 지부와 8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부대로 성장하였는데 그중 인권활동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2000명, 자기자식의 실종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순 참가자가 6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 필자도 과거에 수배되어 있을

당시 어머님의 의식이 눈부시게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바가 있다. 지금은 비록 어머님이 민가협의 단순참가자 수준도 안되지만 우리 어머님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얼마나 강인하고 급속하게 변화시키는지를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교도소 앞에서 단식을 하며 줄기찬 투쟁을 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가장 용감하게 책상을 뒤집어 엎는 우리의 어머니들! 경찰과 검찰도 이러한 어머님들의 투쟁을 감히 어찌지는 못한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타나면 강압적인 그들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달래기에 여념이 없다. 오월광장 어머니들은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열사들의 추모식에 참가하고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세계각국의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FIND(필리핀 실종자 가족단체)

창립된 지 4년정도 되고 회원이 100명 남짓한 이 단체는 독재정권하에서의 수많은 실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정권하에서 약 750명의 실종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들어선 민간정부인 아키노정권에서는 그 숫자가 831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마치 노태우 정권이 후 들어선 김영삼 정부에서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약혼자가 실종되어 죽어가는 것을 군부대까지 뛰어들어가 죽음직전에서 구해내는 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위 단체이외에도 전 세계에는 약 2000개 이상의 민간단체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오늘도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에는 이러한 세계각국의 인권단체들이 NGO(민간기구)로서 참가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심포지움도 열렸다. 이데올로기적인 목적과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를 역암하기 위해 비상시에나 적용할 법을 일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행사는 이후 3일동안 34개국의 83개단체와 5개 국제단체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확인한 최초의 행동이었다는 면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민변을 비롯 불교인권위, 천주교 인권위 그리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여러 국내 인권단체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었다. 한국의 인권관련 민간단체들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를 구성하여 참가하였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나 활동에 있어서 외국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본회의에서도 한국의 민간단체 대표단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여 국가보안법, 식민지문제, 개발과 인권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유엔인권대회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요구에는 미흡하나마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들의 서명으로 세계인권선언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어떻게든 선언과 행동계획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신들의 식민지적 억압과 독재정권의 만행을 감추고 계속해보려는 정부대표들의 입장에 맞서 세계민간단체들은 맹렬한 활동을 벌였다. 한국민간단체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풍물을 치며 계속적인 압박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가까스로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었는데 중

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중요한 부분의 요지를 전제하도록 하겠다.

~

빈 세계인권선언과 행동계획 요지

제1조 세계인권회의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준수, 보호를 증진하는 데 모든 나라가 의무를 다한다는 엄숙한 다짐을 재확인한다.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

외국의 점령아래 있는 민족에 대해 인권기준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국제조처들이 취해져야 한다.

제2조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태고난 권리이며 그 보호, 증진은 정부의 최우선적 의무이다.

제3조 모든 인권은 보편적 상호의존적이며 뗄 수 없는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동일한 근거에 따라 동등한 인권을 다루어야 한다. 국가, 지역적 특성 및 각종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이 갖는 의미는 감안돼야 한다.

제5조 민주주의와 개발 인권존중은 상호의존적, 상호보강적이며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제8조 세계인권회의는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철폐에서 이뤄진 진전을 환영한다.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은 인권파괴를 목적으로 한 행위다.

제9조 여성과 여자 어린이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고 온전하며 불가분한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다.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생활에의 동등한 참여와

모든 성차별의 철폐는 국제사회의 우선목표다.

제10조 세계인권회의는 소수민족 구성원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각 나라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제11조 세계인권회의는 원주민의 기본적 존엄과 개발 및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특유한 공헌을 인정하며 국제사회가 그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복지에 관해 약속한 다짐을 재확인한다.

제17조 세계인권회의는 수많은 난민을 놓은 집단학살 형태의 대규모 인권침해, 즉 민족청소와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망을 표명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처벌돼야 하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

* 행동계획 세계인권회의는 유엔총회가 제48차 총회에서 세계인권회의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인권고등판무관직의 설치를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다.

1995년까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범세계적 비준을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유엔 인권센터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소수민족의 권리보호, 증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

세계인권회의는 개발이나 인권문제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권고한다.

세계인권회의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제, 지역차원의 기존 인권 규정을 좀더 잘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과 국제법위원회가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작업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

이상의 빈 세계인권대회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민간단체의 일원으로 참가한 박래근씨와 박원순 변호사님의 참가수기를 통하여 알게된 것임을 밝혀둔다.

유엔인권대회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국제적 압력은 계속되어 1994년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미국의 캐네디 인권재단과 세계기독학생연맹, 국제고문반대연합 등 3개 민간 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북미회담의 타결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더욱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세계각국의 한국인권에 대한 관심은 현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문제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남아있는 문제는 다만 언제 그러한 행동을 결행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스스로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는 현 정부는 이러한 세계의 여론에 주목하는 데 게을러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이제 세계각지의 동지들과 더불어 얼마남지 않은 싸움을 다그쳐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여론과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13. 무엇을 할 것인가

대체입법은 대안인가?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며 민족통일의 전환적 시대에 걸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냉전질서의 붕괴와 북미간의 관계개선으로 인하여 더욱 활발해지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바꾸며 끈질기게 생존해온 국가보안법을 영원히 역사속에서 주장시키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하게 되면 곧바로 대체입법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앞서 살펴본 국가보안법의 역사속에서 우리는 지난 4·19직후 국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짓을 완전히 자르지 못함으로써 결국 5·16군사쿠데타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 위기에 쫓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이제 새로운 변신을 시도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대체입법이 바로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가진 독을 뽑아내고 긍정점을 살릴 수 있다는 대체입법 주장은 또 한번 국가보안법을 생존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민주질서 수호법이나 기타의 대체입법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입법이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또 다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현실속에서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골격을 유지해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안의 구상은 김대중씨등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당론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지금까지도 주장되어지고 있다. 그럼 민주질서 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반민주적 요소를 제거하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직접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의 선전활동”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과 두번째로 형법의 간첩죄나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북한이나 적대국이 아닌 외국의 간첩행위를 대처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다.

먼저 직접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의 선전활동을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질서 위해의 죄를 살펴보자.

민주질서 보호법

제4조 민주질서 위해의 죄

제1항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항 학문, 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에 목적을 두는 행위 또는 이와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 대체입법의 내용을 보면 먼저 그 규정이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추상적이며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여전히 위배됨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이 무엇인지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한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인지가 분명치 않다. 이는 검찰과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직접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 선전활동에 대하여 형별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로운 사상과 정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의사를

표현할 자유또한 가지고 있다. 다만 그러한 생각과 의사가 어떠한 행동으로 옮겨짐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주었거나 하였을 때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전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에 의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형법의 간첩죄와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북한이나 적대국이 아닌 외국의 간첩행위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형법이 적국의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북한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정책, 군사전략 등과 같은 군사상의 기밀에 대한 누설 탐지 수집행위를 규제하도록 되어있어 군사기밀 이외의 기밀에 대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이다. 이와 관련된 민주질서 보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질서보호법

제2조 제6항 이 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 중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국가기밀에 대한 한정이 없는 국가보안법에 비하여 국가기밀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어 발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또한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한정된 인원이 얼마나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남용의 위험이 높은 것이다.

나아가서 북한을 여전히 국가에 준하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가로 인정할 경우 형법상의 적국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따로 대체입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말이다.

결국 대체입법을 하자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인권유린과 민주탄압의 요소 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지는 남북분단과 대결지향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사상과 양심을 심판하겠다는 것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반통일적인 성격과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방지할 수 없는 대체입법이라면 그것도 역시 종국에 가서는 철폐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신의 이야기중에 물에 빠진 미친개는 봉동으로 떼려 죽이라는 대목이 있다. 불쌍해서 물에서 건져놓으면 사람을 묻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완전철폐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식의 안일한 사고는 마치 불쌍한 미친개를 물에서 건져놓았다가 나중에 그 놈에게 다리를 물리는 화근을 예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런 우를 범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라든가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놓아두고 예외조항을 정리하여 또 다른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 등 다양한 대체입법론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미친개를 떼려잡자는 것이지 적당히 길들이자는 것이 아님을 말이다.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것이다.

그린피스에서 배운다, 행동전이 필요하다

민간의 노력에 의하여 거대한 정부나 자본의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창조적인 행동전이 요구된다.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미 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이라도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행동전을 펼치지 않으면 좀처럼 해결을 보기 힘들다.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앞서 논의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나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전인지도 모른다. 소수의 검찰관계자와 안기부 그리고 일부 분단주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국가보안법의 폐지의견에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부터는 행동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창조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꿀리앗을 거꾸러뜨리는 다윗의 돌맹이이다.

민간차원의 운동으로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예는 그린피스의 운동에서 모범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씨에라



클럽의 서너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그린피스 운동은 현재 30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세계도처에서 핵무기의 확산을 반대하고 캥거루사냥과 고래잡이를 중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많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조직을 확장하고 활동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원천은 DIRECT ACTION(직접행동)이다. 그들의 이러한 독특한 행동전을 몇개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국가보안법 투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자!

1971년 9월 15일 알래스카에서의 미국 핵실험을 저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갓 탄생한 그린피스의 무지개전사들은 24M의 넓은 넙치잡이 배를 타고 핵실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중간에 해군에 의하여 나포되는 운명이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언론 기관과 국민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폭탄속으로 항해한 이들의 행동은 임시로 이름붙인 그린피스라는 이름을 캐나다 언론이 톱기사로 다루게 하였다. 심지어 그들을 나포한 해군들조차도 우리가 만약 군인이 아니었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의 활동에 적

극적으로 동참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얻어냈다.

그린피스의 활동은 1972년 프랑스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하였고 이것은 그린피스를 전세계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열대병과 싸우며 남태평양의 모로루아 환초로 작은배를 타고 항해하였다. 프랑스가 핵무기를 터뜨리기 위하여 띄워놓은 기구밑으로 가깝게 접근하여 핵폭발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행동전을 전개했다. 결국 그들 때문에 프랑스의 핵실험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프랑스 군인들은 군함으로 작은배를 들이받아 부숴뜨리고 나아가서 군인들을 동원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실이 전세계언론에 알려지자 프랑스는 향후 바다에서의 핵실험을 포기하고 지하에서만 실험하겠다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린피스는 이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76년 그린피스는 고래잡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고래와 포경선 사이에 끼어드는 위험한 행동전을 벌였다. 이 행동전 과정에서 심지어 자신들의 1.5M옆에서 고래가 작살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고래잡이들은 그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살 앞에 서있는 그린피스 전사들의 사진은 뉴욕타임즈에 실리고 일본 TV방송에 방영되었다.

1984년 그린피스는 세계각국의 오염배출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산성비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십 미터나 되는 공장굴뚝에 올라가 STOP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

었다. 그들의 침입에 대해 공장노동자들은 명한 눈으로 보았고 비밀경찰들은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각국 대사관의 압력에 밀려 체포한 그린피스 대원들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그들은 1983년에 자유의 여신상꼭대기에 올라가 대형플래카드를 걸거나 코펜하겐의 인어공주동상에 올라가 성조기로 눈을 가리고 마분지 작살로 인어공주를 꿰뚫는 형상을 표현하여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92년 리우 정상회담 당시에는 부시 등 각국 정상의 환경책임회피에 항의하여 런던 트라팔가 광장의 넬슨 기념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1986년 그린피스는 오스트리아의 펠프제지공장인 노이지들러 AG사의 폐수관을 두들겨 막았다. 이들은 1987년에는 카린티아에서 BBU화학회사의 폐수관을 털어막았고 88년에는 벨기에의 다국적 기업 솔베이사의 로지그나노 공장의 산업폐기물 배출구를 봉쇄했다. 그들은 지중해로 나있는 폐기물 배출구의 한쪽에 몸을 묶고 플랭카드를 덮어 배출구를 막은 후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다. 심지어 이들은 펌프를 동원 폐기물을 본래의 공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도 벌였다.

1989년 그들은 일본의 포경에 반대하여 고래크기의 청원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아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1990년에는 스위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괴스겐 핵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수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달리는 기차를 가로막았으며 그해 10월에는 미국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산책로에 길이 5Km의 그물로 유자망 사용을 금지하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것은 그린피스의 맹렬한 행동전에 대한 극히 일부의 보고에 불과하다. 그들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지금이 있기까지 올해 4월 중순 영국의 핵공장에 침입하여 단체회원 61명이 구속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다치고 목숨을 잃는 과감한 직접행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9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린피스는 영광원전의 배수구앞에서 보트를 타고 해상시위를 벌였으며 국내환경단체는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방독면을 써우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도 이러한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장기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삶을 표현하여 0.7 평짜리 감방을 만들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한다든지 6·3빌딩 꼭대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재판을 저지하는 직접행동도 필요하다. 아니면 과감하게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행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판금서적을 대형으로 제작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전시하여 그곳을 구경한 모든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뺏으로 만들어 씹어먹는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이제 우리에겐 창조적인 행동전이 필요하다. 쓰러져가는 구시대의 거추장스러운 이 괴물에 누가 폭약을 장착할 것인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14. 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반란의 시작

국가보안법에 대한 줄기찬 폐지투쟁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국민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속에 국가보안법의 수호를 담당해 야할 법관들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의 위헌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1995년 1월 17일 법원이 국가보안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이 법 제 7조 1항, 3항, 5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고 이 규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피고인(정은경 전 대우정 밀 노조 여성부장등)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부산 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로서는 기존 법체계에 정면도전하는 셈이고 이후 인사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반란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기초질서의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사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와 전복을 유도 선동하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존재이유라고 말했다.

무죄석방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92년 6월 23일 우리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전면무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는 전통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해온 지하조직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정현 피고인(22.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석방하였다. 이유는 물론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이 북한에 대하여 비판을 해왔다는 근거등을 들고 있지만 어찌됐거나 연행 구속 중형의 관행을 깨고 국가보안법 또한 이성적인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들어서도 이러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무죄석방이 이어졌다. 그것도 평범한 위반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상임의장으로서 범민족대회를 주최하려던 핵심적 (과거라면 아마 수괴로 지목되었을 것이다)인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995년 4월 6일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는 범민족대회 개최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씨(57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주장과 유사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등이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과 관련해 제작배포한 문건들이 폭력 및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할 것을 유도 선동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국가보안법 7조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지를 법원이 보여준 것이다. 문제가 된 국가보안법 7조는 지난 90년 4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왔고 이것은 재판부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례에 대한 무죄석방사례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남북간의 화해가 조성되고 통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무죄석방사례는 그 자체로 계속해서 그 법률의 폐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들어가 사망선고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녹이는 통일편지

국가보안법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니뭐니해도 통일바람이다. 겨울눈이 봄바람에 녹아내리듯이 남과 북의 동포애와 민족단결이 강화되어가면서 더이상 국가보안법은 설 땅을 잊게 된다. 이미 남북교류협력법과의 충돌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교류와 통일기운이 활성화되가면서 결국

폐지되고 말 것이다. 다음의 편지들은 이러한 남과 북의 통일바람을 실어나르는 편지들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벌이고 있는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운동을 수집된 것들이다.

북쪽에 계신 여러 어른들께

안녕하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지 어언 50년. 한 핏줄 한 형제가 오도가도 못하고 소식조차 전할 수 없으며 서로 미워하면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아픈 일입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나이 70세가 넘은 늙은이입니다. 30세도 못되어 홀로 되어 네 남매를 고생스럽게 키우고 이제 손자들 뒷바라지를 하다보니 머리가 센 할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도 용강군이고 어머니 고향은 황해도인데 두 어른이 모두 일제시대 때 어린 나이로 고향을 떠나오셔서 아버지는 환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난 해 초겨울에 9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기 몇 달전 서울에 사는 친정조카들을 불러서 유언을 하듯 고향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고향은 황해도 평산군 주암면 철산리인데 철량개라고도 한다. 통일이 되거든 꼭 찾아가서 친척을 찾아뵈어라”

분단이 되기 전에는 큰외숙부님(우정은)이 가끔 고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가 제 어머니 고향 어른들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저의 여생의 소망은 금방 통일은 어렵겠지만 길이라도 열려서 내 나라 내 땅 북녘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가서 밤을 지새며 지난 이야기를 오순도순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미국도 영국도 아닌, 그리운 내 나라 북쪽 땅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닌 그리운 북족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만 큰 힘이 되어 세계 여러나라 중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통일될 그 날까지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441-09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둔동 42-134 전은이 드림.

사랑하는 북녘 친구들에게

안녕, 친구들. 난 너의 모습을 볼 수도,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한 핏줄 한겨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나는 서울의 북쪽, 도봉구에 살고 있는 송은선이라고 해. 난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했단다.

그런데 너의 주위에는 이산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니? 내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 우리 같이 생각해봐. 아주 가까운 한 가족이 서로 헤어져 살아야 한다니! 너무 슬프지 않니.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꼭 통일을 이루해야 돼. 더 이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돼. 게다가 우린 한 민족, 한 핏줄이잖아. 단군왕검께서 흥익인간 정신으로 우리를 한 핏줄로 맺어놓으셨잖아. 우린 더 이상 남한, 북한 나뉘어서 두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통일을 이루어야 해. 우리 통일을 함께 기원하자.

그럼 이만 줄일께. 안녕

132-073 서울시 도봉구 수유 3동 172-103호 송은선

〈전쟁포로임에도 34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신 함세환 할아버지께

서 북녘 누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고 싶은 누님에게

누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누님께서 이 동생과 만날 그날을 애태게 기다리며 보내주신 편지와 사진을 반가히 받아보았습니다. 늦게 회답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출가하신 누님과도 한마디 말씀도 올리지 못한 채 사랑하는 고향, 당골 마을을 떠난 지도 어언 4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네요.

전쟁의 와중에서 온 가족이 처참하게 희생되고 누님만이 생존해 계시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추석때마다 아버님과 어머님 묘소를 찾아뵈신다니 그 고마움을 무슨 말로 적을까요.

저도 하루빨리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 묻혀 있을 아버님과 어머님, 묘소나마 찾아뵙고 울고 싶습니다. 목놓아 울고 싶습니다. 누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던 날은 온 누리에 눈이 덮이고 눈보라가 몰아치던 추운 날씨였어요. 아버님이 심으신 감나무 밑에서 아버님과 어머님과 헤어졌어요.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 이별이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략)

온갖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굽힘없이 34년의 옥고를 극복했으며, 출소후에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감시 대상이 되어 있고 경고처분을 몇번이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진심어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편지와 선

물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누님 제 걱정일랑 마세요. 출소후에 과수원, 부화장, 보일러 설비, 주유소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리 태평양 주유소 관할하의 인권 자동차 매매 건축장에 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우나 건강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마음은 놓으세요.

누님은 조국의 품에서 정권이와 손자 손녀와 단란하게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누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래오래 계세요. 기필코 이 동생을 만나 보셔야지요. 저도 누님을 뵙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끝이 없으나 누님의 육체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연락 또 드리겠습니다.

1995.4.18 남녘 땅에서, 함세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자!

92년 4월 11일 동국대학교에서는 종교, 시민, 각종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한참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될 당시이므로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질의서도 보내고 1000인 선언을 조직하기도 하는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 기반하여 1995년에는 여성, 종교, 노동단체 등 광범위한 계급계층이 망라된 8·15 민족공동행사준비위 산하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중이다. 대책위에서는 7월 20일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중

심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국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행사와 범국민적인 웰기대회를 개최한다. 1995년 10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반세기 동안 민족의 가슴을 가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동여멘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끝이 다가올수록 처음처럼이라는 노래가사처럼 우리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땀과 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부 록

- 1.국가보안법
- 2.보안관찰법
- 3.보안관찰법시행령
- 4.국기보안법대처요령
- 5.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 6.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7.1994년 미국무부 남한 인권보고서
- 8.인권단체 주소록

國家保安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等)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新設 91·5·31>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僥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 <改正 91·5·31>

②削除 <91·5·31>

第2章 罪와 刑

第3條 (反國家團體의 構成등) ①反國家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1. 首魁의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幹部 기타 指導的 任務에 종사한 者는 死刑 ·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그 이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他人에게 反國家團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⑤第1項第3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 한다. <改正 91·5·31>
- 第4條 (目的遂行) ①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그 目的遂行을 위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處罰한다. <改正 91·5·31>
1. 刑法 第92條 내지 第97條 · 第99條 · 第250條第2項 · 第338條 또는 第340條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각條에 정한 刑에 處한다.
 2. 刑法 第98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을 探知 · 蒐集 · 努설 · 傳達하거나 仲介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處罰한다.
 - 가.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이 國家安全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知得이 허용되고 敵國 또는 反國家團體에 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知識인 경우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 나. 가목외의 軍事上 機密 또는 國家機密의 경우에는 死刑 ·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3. 刑法 第115條 · 第119條第1項 · 第147條 · 第148條 · 第164條 내지 第169條 · 第177條 내지 第180條 · 第192條 내지 第195條 · 第207條 · 第208條 · 第210條 · 第250條第1項 · 第252條 · 第253條 · 第333條 내지 第337條 · 第339條 또는 第34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死刑 ·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4. 交通 · 通信,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사용하는 建造物 기타 重要施設을 破壞하거나 사람을 略取 · 誘引하거나 艦船 · 航空機 · 自動車 · 武器 기타 物件을 移動 · 取去 한 때에는 死刑 ·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5. 刑法 第214條 내지 第217條 · 第257條 내지 第259條 또는 第262條에 規定된 行爲를 하거나 國家機密에 속하는 書類 또는 物品을 損壞 · 隱匿 · 偽造 · 變造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行爲를 煽動 · 宣傳하거나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가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事實을捏造하거나 流布한 때에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②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③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④第1項第5號 및 第6號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第5條 (自進支援 · 金品收受) ①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를 支援할 目的으로 自進하여 第4條第1項 각號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第4條第1項의 例에 의하여 處罰한다.

②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收受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③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⑤削除 <91·5·31>

第6條 (潛入·脫出) ①國家의 存位·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를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③削除 <91·5·31>

④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1·5·31>

⑤第1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⑥第2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第7條 (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의 活動을 讴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②削除 <91·5·31>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造成할 우려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捏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畫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頒布·販賣 또는 取得한 者는 그 각項에 정한 刑에 處한다. <改正 91·5·31>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1·5·31>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第8條 (會合·通信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를 받은 者와 會合·通信 기타의 方法으로 連絡을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

②削除 <91·5·31>

③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改正 91·5·31>

④削除 <91·5·31>

第9條 (便宜提供) ①이 法 第3條 내지 第8條의 罪를 犯하거나 犯하려는 者라는 情을 알면서 銃砲·彈藥·火藥 기타 武器를 제공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1·5·31>